

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	보 도 자 료			
	보도	배포 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이진수(02-2100-2990)	담 당 자	고선영 사무관 (02-2100-2991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김준환(02-3145-7550)		이종오 팀장 (02-3145-7447)
	여신금융협회 본부장 배종균(02-2011-0602)		조윤서 부장 (02-2011-0740)

제 목 : 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.

- ① '21.12.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,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'22.1.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. (중전 0.8~1.6% → 개정 0.5~1.5%)
- ①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**287.8만개**(전체 가맹점의 96.2%)
 - ②결제대행업체(PG) 하위가맹점 **132.9만개**(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.2%)
 - ③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**16.5만명**(전체 택시사업자의 99.8%)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(0.5~1.5%)가 적용됩니다.
- ② '21년 하반기('21.7.1일~ 12.31일)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·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**약 18.2만개**에 대해서는
-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*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, 그 규모는 **약 492억원**(가맹점당 27만원) 정도로 추산됩니다.
- * '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(0.8~1.6%)

1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

- '21.12.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, '22.1.26일,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습니다.
(※ 중전 0.8~1.6% → 개정 0.5~1.5%)

- '22.1.31일부터 ①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②PG 하위가맹점*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.

*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(Payment gateway)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 사업자 등

① (신용카드가맹점) '22.1.31일부터 **287.8만개**의 신용카드가맹점(전체 299.3만개 중 96.2%)에 대해,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

-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'22.1.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

- 또한, 여신금융협회 콜센터(☎02-2011-0700)나 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」*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(☞참고)

* (인터넷 접속시) www.cardsales.or.kr (모바일 애플리케이션) 카드매출조회

② (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)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
-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**132.9만개**(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.2%), 개인택시사업자 **16.5만명**(전체 택시사업자의 99.8%)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(**0.5~1.5%**)이 적용될 예정이며,

-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【신용·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】

구분	연간 매출액 (가맹점수)	적용 수수료율			
		신용카드		체크카드	
		종전	변경	종전	변경
영세	3억원 이하 (가맹점 226.7만개, PG 하위가맹점 105.4만개, 택시 16.5만명)	0.8%	0.5%	0.5%	0.25%
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(가맹점 23.5만개, PG 하위가맹점 10.5만개)	1.3%	1.1%	1.0%	0.85%
중소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(가맹점 22.3만개, PG 하위가맹점 10.1만개)	1.4%	1.25%	1.1%	1.0%
	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(가맹점 15.3만개, PG 하위가맹점 6.8만개)	1.6%	1.5%	1.3%	1.25%

- (제도 개요) 2021년 하반기 중('21.7.1.~'21.12.31.)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*받다가,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·중소 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,

*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

- 각 카드사에서 '22.3.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(기납부 수수료 - 우대수수료)을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.

※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며, '22.1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부터 적용 → '22.9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

* (~'22.4월) 연계 시스템 등 구축 → ('22.5~6월) 시스템 테스트 → ('22.7월) 우대가맹점 선정 → ('22.9월) '22.1월부터 개업한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환급(소급적용) 실시

- (환급액) '21.7.1~12.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“기납부한 카드수수료”와 “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 수수료”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.

◆ 환급액 = '21.7.1일~'22.1.30일 동안 카드매출액 × ('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- '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(0.8~1.6%))

※ (사례) '21.7.1일 개업,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.4억원(연매출 환산 2.4억원) 가맹점이 2.2%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, 금번 환급조치로 약 196만원 환급* 가능

* 7개월간 카드매출 1.4억원 * (기납부수수료율 2.2% - 우대수수료율 0.8%) = 196만원

-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,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별·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* 2021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2년 3월 14일부터 확인 가능

- (전체 환급 규모) '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.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, 약 492억원 환급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. (※ 가맹점당 약 27만원 환급)
- (환급 안내)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. (☞참고2)
 - 참고로,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,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*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,
 - * (예) 2021년 7월 ~ 2021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1년 12월 31일 전 폐업
 -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'22.3.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【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】

구 분	전화번호	구 분	전화번호
여신금융협회	02)2011-0700	현대카드	1577-6000
KB국민카드	1588-1788	NH농협은행	1644-7400
롯데카드	1588-8100	비씨카드	1588-4500
삼성카드	1588-8700	신한카드	1544-7000
하나카드	1800-1111	씨티은행	1566-1000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쁜거 지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	---	--	---	-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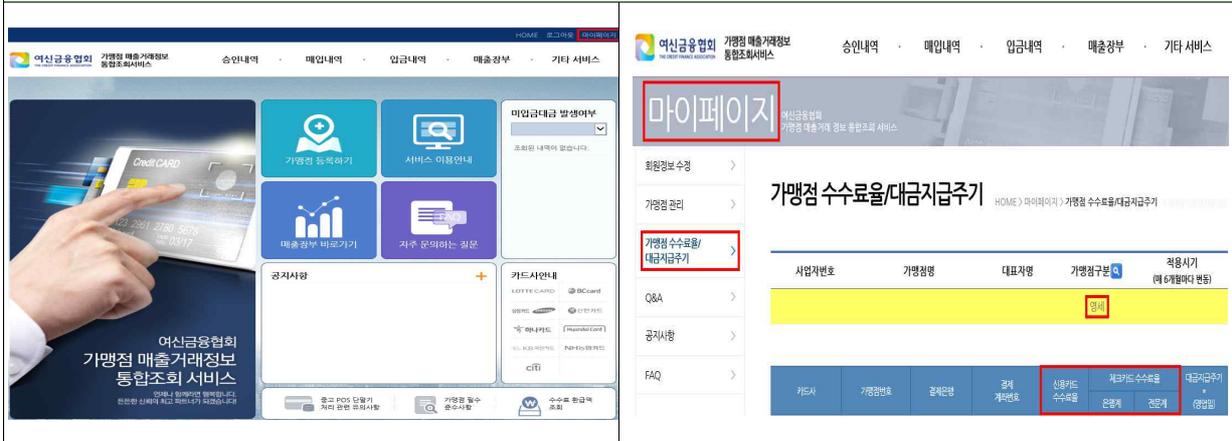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참고1

가맹점 수수료를 확인 관련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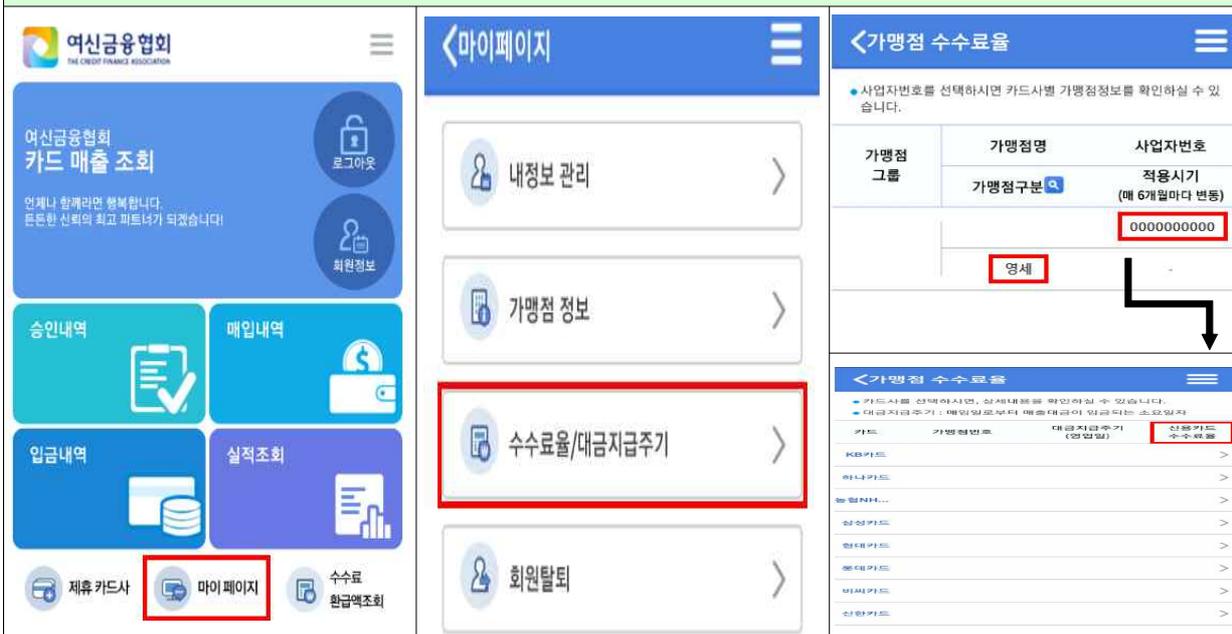
[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]

① 인터넷 홈페이지 (www.cardsales.or.kr)



① 통합조회 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"마이페이지" 접속 → ② 마이페이지에서 "가맹점 수수료율"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

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(카드매출조회)



① 마이페이지 → ② 수수료율/대금지급주기 → ③ 가맹점수수료율 → ④ 사업자번호 클릭

【환급대상 영세가맹점에 대한 안내문 예시】

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적용 안내

[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]

구분	신용카드	체크카드
영세가맹점 (연 매출액 3억원 이하)	0.5%	0.25%
중소가맹점 (연 매출액 3 ~ 5억원)	1.1%	0.85%
중소가맹점 (연 매출액 5 ~ 10억원)	1.25%	1.0%
중소가맹점 (연 매출액 10 ~ 30억원)	1.5%	1.25%

이에 따라 귀 가맹점은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되어 2022년 1월 31일(월)* 이내에 **신용카드 0.5%, 체크카드 0.25%**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

*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우대수수료를 적용

또한, 귀 가맹점은 2021년 하반기에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신규 가맹점으로, 카드사는 금번에 한해, 2021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(신용:0.8%, 체크:0.5%)을 적용하여 이전에 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*할 예정입니다.

* 단, 카드매출이 없었거나 현재 수수료율이 안내된 우대수수료율 보다 낮은 경우, 환급액이 없을 수 있음

※ 상기 우대 수수료율과 수수료 환급 금액('22.3.14.(월) 이후 확인 가능)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「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」(www.cardsales.or.kr)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【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】

① 인터넷 홈페이지

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

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"수수료 환급액 조회"
 * (인터넷 홈페이지) www.cardsales.or.kr (모바일 애플리케이션) 카드매출조회

【환급 관련 정보 안내】

구분		확인 가능한 정보
협회	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	▶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
카드사	각 사 홈페이지	▶ 일별·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, 수수료율, 환급 금액